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 권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59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4. 2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,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(안 제35조제1항 개정)
- 나.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(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)
- 다.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(안 제35조제2항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대집행 권한의 위탁)”을 “(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”로, “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”을 “제4호의2,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”으로, “법 제24조제4항”을 “법 제9조의2제1항”으로, “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”을 “제1항 각 호의”로,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
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대집행 권한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. <신 설> <신 설>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계획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(戒告)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	제35조(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----- -- 제4호의2,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----- 법 제9조의2제1항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9조에 따른 대집행(代執行) 2.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----- 제1항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44